

근로자 규정개정 관련 시스템 변경 사항

< '18. 01. 05(금), 능력개발팀 강주완 >

1. 근로자카드 발급 자격 추가 - “대규모기업 단시간 근로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카드 발급 자격 조건 “대규모(중견)기업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단시간 근로자)” 항목 추가
- 정부지원액의 80% 지원 (기존 단시간 근로자는 동일하게 100% 지원)
- 비정규직으로 분류

2. 일용근로자에 대한 카드발급 요건 변경 (30일 이내 10일 이상 근로내역 → 60일 이내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내역)

- 60일 이내 일용근로 내역 중 연속한 30일 동안 10일 이상의 일용근로 내역이 존재해야함.

예) 1월 1일부터 3월 1일까지 60일 중 “1월1일”, “1월10일~1월17일”, “3월1일” 에 일용근로내역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 10일 이상 근로는 하였지만 연속한 30일 동안 10일이 안되므로 근로자카드 신청불가.

- 기존에 홈페이지에서 30일 이내 일용근로내역이 조회되지 않을 경우, 방문신청을 통해 일용근로내역을 서류상으로 확인 후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시스템에서 120일 이내의 일용근로내역을 보여주었으나 위 규정 변경에 따라 홈페이지, 행정지원시스템 모두 60일 이내 30일 동안 10일에 해당하는 일용근로내역만 조회됨. (60일 이내 10일이 존재하지만 30일 이내 10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조회되지 않음).

- 근로자카드 유효기간 3년

3. 근로자카드 재발급 신청 요건 완화 (카드 만료 후 재발급 신청 가능 → 만료 14일 전 재발급 신청가능)

- 기존에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재발급 신청이 가능했

으나, 규정 개정 후 만료 14일 전(만료일 포함)에 재발급 신청가능
(예) 2018년 1월 14일이 근로자카드 만료일인 훈련생은 2018년 1월 1일부터 근로자카드 재발급 신청 가능. 만료일 - 13일)

- 만료 14일 이전에 신규 또는 기존카드재사용으로 근로자카드를 재발급 받을 때, “발급” 처리가 되는 순간 기존에 사용하는 카드는 만료 처리됨. (유효기간종료일자는 유지)

4. 근로자카드 발급 요건 소멸에 대한 카드유효기간(1년) 조정

- 근로자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후 퇴사나 이직을 하여도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이 유지되었으나, 규정 개정이 후 발급 받을 당시 취득되어있던 고용보험 정보가 퇴사나 이직으로 인해 상실될 경우, 발급 받은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카드 유효기간 시작일로 부터 1년으로 축소. (일용직근로자 제외)
- (예1) 18년 1월 5일에 발급받은 사람이 18년 1월 10일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 18.01.05~21.01.04에서 18.01.05~19.01.04로 변경됨
- (예2) 18년 1월 5일에 발급받은 사람이 19년 12월 1일에 퇴사할 경우 해당 근로자카드의 유효기간은 기존 18.01.05~21.01.04에서 18.01.05~19.01.04로 변경되므로 즉시 사용정지 됨.
- **2018년 1월 5일 이후 발급하는 카드부터 적용(센터 발급일 기준)**

6. 근로자카드 신청 시, 교대제근로자 여부 항목 추가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7조의2(교대제 근로자 등에 대한 혜택)”와 관련하여, 행정 처리의 근거 자료를 위해 근로자카드 신청서 작성 시 교대제근로자 여부 체크 항목 추가.

7. 부정발급 및 부정출석에 대한 제재 변경

- 기존 근로자카드 부정발급 및 부정출석 시, 카드의 유효기간 종료일까지 카드발급 제한 및 수강 제한을 통해 제재하였으나, 규정 개정 후, 부정발급은 처분일자로부터 90일 동안 카드발급 제한, 부정출석은 처분일자로부터 180일 카드사용 정지로 변경

※ 현재 개발 미완료로 1월 둘째 주 반영예정.

8. 미수료 및 수강포기에 대한 패널티 변경

미수료 및 수강포기 횟수	규정 개정 전	규정 개정 후
1	지원한도액 20만원 삭감	- 지원한도액 2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2	지원한도액 30만원 삭감	-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3	카드의 남은 유효기간 동안 카드사용 정지	- 지원한도액 30만원 차감 - 사유 발생일로 부터 60일간 카드 사용 중지 - 패널티 발생 이후 훈련과정 등록 시, 자비 부담금 20% 추가 발생 ※ 해당 훈련과정 수료 시 환급

- 18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 적용되며 18년 7월 이전에 시작된 과정에서 발생한 패널티에 대해서는 지원한도액 차감만 적용하고 패널티에 따른 자비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음.
- (예) A 훈련생이 18년 6월 20일부터 18년 7월 2일까지 운영되는 훈련과정에서 미수료를 하여 2회째 패널티가 발생한 경우, 지원한도액 30만원만 차감되고 60일동안 카드사용이 중지된다. 하지만, 이후 18년 10월 5일에 시작되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경우 패널티 2회를 받았지만 18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새롭게 패널티를 계산하게 되어 패널티 자비부담금이 없다. 18년 10월 5일에 시작되는 훈련과정에서 패널티를 받게 되는 경우 패널티 1회로 들어간다.

※ 18년 7월 규정 적용 예정